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1 제4호나목의 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)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(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규모별 세부기준이 대형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한한다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75 (044) 203 - 5215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 31] 안전교육실시방법(제51조제1항 관련) 1. ~ 3. (생략) 4. 교육의 대상범위, 기간 및 과정			[별표 31] 안전교육실시방법(제51조제1항 관련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		
교육과정	교육대상자	교육기간 등	교육과정	교육대상자	교육기간 등
가. 전문교육	1) ~ 6) (생략)	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(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)	가. 전문교육	1) ~ 6) (현행과 같음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나. 특별교육	1) 운반차량운전자	신규 종사 시 1회	나. 특별교육	1) -----	----- ---
	2) <u>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</u>			2) <u>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(「자동차관리</u>	

현행			개정안		
			<u>법」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규모별 세부기준이 대형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한한다)</u>		
	3)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원		3) ----- -----		
	4) 고압가스사용 자동차 정비원		4) ----- ---		
	5)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		5) ----- ----- --		
다. 양성교육	1) ~ 5) (생략)		다. 양성교육	1) ~ 5) (현행과 같음)	
비고	1. ~ 7. (생략)		비고	1. ~ 7. (현행과 같음)	